##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298

발의연월일: 2025. 5. 1.

발 의 자:정준호·박희승·이춘석

임호선 · 김남근 · 이학영

김태선 · 염태영 · 이연희

김병기 · 안태준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주택 판매촉진을 위한 견본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승인 이후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동일한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일부 시행사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견 본주택을 통한 홍보를 하면서, 해당 행위를 주택판매나 조합원 모집이 아닌 사업추진을 위한 임의단체 가입자 모집으로 서류를 꾸려 법망을 우회하고 있음.

이로 인해 사업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법을 잘 모르는 입주희망자들이 계약금인 줄 알고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임.

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업확정이 되지 않은 상

황에서 견본주택을 통해 입주 희망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제7항 및 제104조제4호의6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 계획승인을 받기 전에 제60조에 따른 견본주택을 건설하여서는 아 니 된다.

제104조에 제4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6. 제15조제7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 견본주택을 건설한 자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5조(사업계획의 승인) ① ~	제15조(사업계획의 승인) ① ~		
⑥ (생 략)	⑥ (현행과 같음)		
<u> &lt;신 설&gt;</u>	⑦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		
	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		
	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 제6		
	0조에 따른 견본주택을 건설하		
	<u>여서는 아니 된다.</u>		
제104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	제104조(벌칙)		
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			
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			
의 벌금에 처한다.			
1. ~ 4의5. (생 략)	1. ~ 4의5. (현행과 같음)		
<u>&lt;신 설&gt;</u>	4의6. 제15조제7항을 위반하여		
	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 견		
	<u>본주택을 건설한 자</u>		
5. ~ 14. (생 략)	5. ~ 14. (현행과 같음)		